

2026년 어린이집 무상보육 자원 사업 변경 계획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기간	2026. 01. ~ 12.	2026. 01. ~ 2027. 02.
정산보고	2회 ※ 2026. 9월(3월 ~ 8월분), 익년도 3월(9월~익년도 2월분)	1회 ※ 2027. 3월 (2026. 3월 ~ 익년도 2월분)
변경사유	※어린이집 학기 구분(3월~익년 2월)에 따른 집행기간 적용	

2026. 5.



달성군
DALSEONG GUN



[교육정책과]

☒ 사전 검토항목			
성인지 관점 고려 여부	예 ☒ 아니오 ☐	여성친화도시 관점 고려 여부	예 ☒ 아니오 ☐

2026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 변경 계획

I 관련 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달성군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41조 제1호 제9항
-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II 추진배경

- ☐ 어린이집별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있는 특별활동 진행
- ☐ 영유아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모든 원아에게 양질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 필요
- ☐ 공립 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을 무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정책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예방

III 추진방향

- ☐ 다양한 특별활동을 진행하여 영유아의 인지와 정서 발달에 기여
- ☐ 영유아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조기에 재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2025년 하반기 교육부 무상보육비 지원에 따라 5세 아동에게 월 7만원이 지원되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추후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으로 달성군 무상보육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 완전 무상보육 추진

※ 교육부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연령: 25년 5세 / 26년 3월 4-5세 / 27년 3월 3-5세(예정)

IV 용 어 정 의

□ 기타필요경비: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

1. 세부내역: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특성화비

가.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피복류 구입비: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하는 경우 구매 가능 단, 단순히 학년이 바뀌는 것을 명목 불가

나.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2)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다.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 활동등)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라. 차량운행비: 보호자 요청에 다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마.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6)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7) 특성화비: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V 사 업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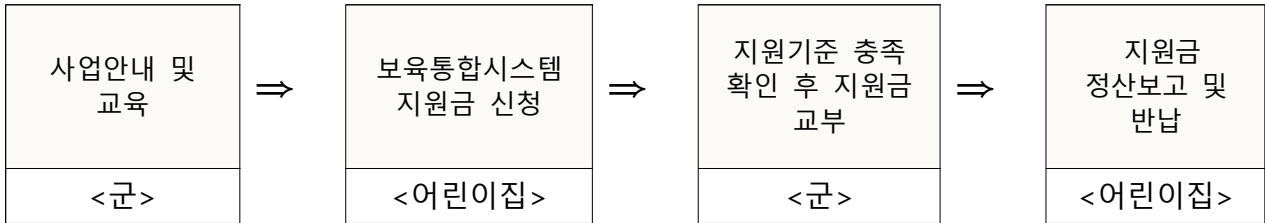
- ☐ 사업기간: 2026. 1. ~ 2027. 2.
- ☐ 지원대상: 달성군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개월 이상 영유아
 - ※ 관내 어린이집 159개소 총 4,018명
 - ※ 24개월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
 - ※ 반 미편성된 아동은 지원 제외
- ☐ 총사업비: 3,578,400천 원(군비100%)
- ☐ 지원내용

기간	지원연령	지원항목	지원금액	비고
'26. 1.~2.	24개월 이상~4세 아동	특별활동비	아동 1인당 월 70,000원	
	5세 아동	기타필요경비		
	5세 외국인 아동 (교육부 무상보육비 지원 미대상)	기타필요경비	아동 1인당 월 140,000원	
'26. 3. ~ '27. 2.	24개월 이상~3세 아동	특별활동비	아동 1인당 월 70,000원	
	4~5세 아동	기타필요경비		
	4~5세 외국인 아동 (교육부 무상보육비 지원 미대상)	기타필요경비	아동 1인당 월 140,000원	

- ※ 4~5세 아동 기타필요경비 지원: 상위연령 유아(2019년생)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하위연령 유아(2022년생)가 조기에 취학하여 누리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도 지원 가능
- ※ 어린이집의 신청 대상 아동에 한해 정해진 자원금 이하로 신청 가능
- ※ 교육부 무상보육비 2026년 3월 만 4~5세 아동 연령별 확대 시행

VI 추진 체계

□ 업무흐름도



□ 세부 추진절차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 → 군 / 매월신청

1. 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가.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0일 현원 기준으로 신청

※ 10일 전 퇴소한 아동 신청 불가

나. 지급조건: 아동 1인당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10일을 기준으로
10일 입소 아동까지 지급하고, 10일 이후 입소 아동은
익월부터 지원

다. 소급신청: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포함 3개월 이내
소급 가능하나 아동이 퇴소한 경우 소급 불가

2. 유의사항

가. 24개월 이상 ~ 만 3세아동

1) 신청제한

가) 교육청, 직장 등에서 특별활동비 전액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중복지급불가)

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또는 미참여) 아동 지원
불가

2) [붙임2]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변경 신청서 제출한 어린이집에
한해 정해진 지원금 이하로 신청 가능

※ [붙임1]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반납 신청서 제출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경우 또는 [붙임2]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변경신청서 제출 후 지원 금액을 변경한 경우 추후 추가 지원 또는 소급 지원 불가

- 3) 지원금 신청 이후 아동의 퇴소, 참여 포기 등으로 미참여(집행기한 내 1회 이상 미참여)하여 실제 지원 대상 아동 수 변경 시, [붙임1]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반납 신청서 작성 및 익월까지 반납(누락되어 반납 못할 경우, 추후 정산 시 반납해야하며 되도록 익월까지 즉시 반납)

가. 만 4-5세 아동

- 1) 기타필요경비 및 유아직접교육경비 항목으로 지출 후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수납하지 않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이 필요하거나 정해진 지원금 이하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붙임1~3]을 활용하여 반납 또는 변경 신청

(지원금 교부) 군 → 어린이집 / 매월 교부

1. 교부기간: 매월 1회 / 25일 전까지
2. 확인사항: 지출한도액 준수 여부, 지원 대상 충족 여부 등

(지원금 집행) 어린이집

1. 기타필요경비 항목별 집행기간 및 지출한도액

항목	집행 기한	지출한도액
급식비(아침, 저녁)	매일	2,500원/1식
특별활동비	매월	월70,000원
차량운행비		월32,000원
특성화비	분기	월37,000원
현장학습비	연	연180,000원
입학준비금		연110,000원
행사비		연140,000원

※ 집행 기한 및 집행한도액 기준은 대구광역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에 따름
- 3월 ~ 익년도 2월 지원금 : 익년도 2월까지 집행 후 3월 정산 보고

- ※ 지원금은 신청 대상 아동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므로 집행 잔액을 다른 아동에 대해 집행하여서는 안 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반납조치 해야 함
- [예시] A, B, C 3명의 아동에 대해 지원금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집행 잔액을 D 아동에 대해 집행 (×)

※ 지원금의 경우 각 항목별 1인당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2. 유의사항

가. 24개월 이상~3세 아동

- **특별활동비** 외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사용 불가하며,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나. 4~5세 아동

- 교육부 4~5세 유아 무상보육비로 특별활동비 선 집행 후 추가 특별활동비 지출분 발생 시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집행, 추가 특별활동비 지출분 미발생시 그 외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집행

※ 4-5세 아동 기타필요경비 지출: 상위연령 유아(2019년생)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하위연령 유아(2022년생)가 조기에 취학하여 누리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도 기타필요경비로 집행 가능

다. 교육부 무상보육비,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을 어린이집 기타필요 경비 지출한도액에 준하여 집행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 4-5세에 한하여 유아직접교육경비로 사용 가능

※ 유아직접교육경비: 특별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 현장학습시 간식비 지출 등

(지원금 정산) 어린이집 → 군

1. 정산보고: **익년도 3월**(당해연도 3월분 ~ 익년도 2월분)
2. 작성서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 정산 서식(excel)
3. 제출사항
 - 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 정산 서식(excel)
 - 나. 특별활동 업체 관련 자료(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감사이력서 등)
 - 다. 지출 증빙 자료(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서 등)
4. 제출방법: 공문(문서24)

5. 유의사항

- 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 정산 서식(excel)에서 월별 작성 및 관리
- 나. 지원금 교부액과 정산보고서 상 지원금 일치 여부 및 반납금액 유무 확인 후 반납 조치
- 다. 1세반(‘24년생)의 경우 24개월 이상부터 지원되므로, 지원금 정산 시 지원받은 24개월 이상 아동에 대한 비용만큼만 기재하고, 지출 결의서에도 별도 기입
 [예시] 1세반은 인원수로 나누어 24개월 이상에 대한 비용만 정산보고서에 작성(18개월 이상 24개월미만의 영유아는 동의 받아 참여할 경우 부모에게 수납)
- 라. 4~5세 아동의 경우 특별활동비 외 기타필요경비로 사용가능하며 지원금 정산 시 항목별 지출결의서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
 ※ 4~5세: 지출결의서상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과 ‘교육부 5세 무상보육비’ 구분 표기

VII **특별활동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운영계획

-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

☐ 정보공개

-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공개해야 함(월 1회)
- 특별활동비용, 업체 등 공시항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수정 필요

☐ 보호자 동의

-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서식)

☐ 운영시간

-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기본 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하여 연장보육 시간까지 이어

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VIII 어린이집 유의사항

- ☐ 24개월 이상~3세 아동의 경우 특별활동비 외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지출 불가
- ☐ 교육청, 직장 등에서 특별활동비 전액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불가(중복지급불가)
 - ※ 다만, 타기관에서 특별활동비 지원 받을 경우,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달성군 특별활동비 지원금액의 차액분만 지급
- ☐ 어린이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정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및 수납 주기를 초과하여 지원금 신청 및 특별활동비 지원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별도 수납할 수 없음
- ☐ 교육부 무상보육비,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 사업 시행에 의거하여 달성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의 경우 ‘차량운행비’를 제외한 기타필요경비 수납을 제한하며, 단계적 완전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차량운행비 또한 가급적 수납 지양
- ☐ 기타필요경비의 집행기한 및 지출한도액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 ☐ 각 항목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에 맞지 않는 지출의 경우 반납
 - 예) 부모부담행사비: 경시대회 응시료 등 지출불가
-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 증빙 등에 철저히 관리
 - 지출품의 및 결의서 구체적으로 작성(목적, 품목, 참여 아동 수 등)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외에도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 이력서, 업체 계약서, 물품구입 사진 등 관련증빙자료 첨부
- ☐ 어린이집 예산 편성 시 세입은 ‘보조금 및 지원금’에 편성하고 세입예산서 적요란에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으로 명시, 특별활동비 지출 시 세출은 ‘수익자 부담경비-특별활동비’ 항목으로 지출, 4-5세 특별활동비 외 기타 필요경비 지출 시 세출은 ‘수익자 부담경비-기타 필요경비 지출’ 항목으로 지출 세출 예산서 및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상세하게 작성

[예시1] A 업체 특별활동비 50만원 지출한 경우 :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30만원 A업체 지출, 부모자부담(지원 받지못한 아동) 또는 어린이집 운영비 20만원 A업체 지출

[예시2] B 어린이집 5세 아동 현장학습비 70만원 지출한 경우 : 현장학습비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35만원 지출, 교육부 5세 무상보육비 35만원 지출

- 1세반(‘24년생)의 경우 24개월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지원금 정산 시 24개월 이상에 대한 비용만큼만 기재하고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별도기입
 [예시1] 1세반은 인원수로 나누어 24개월 이상에 대한 비용만 정산보고서에 작성(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동의 받아 참여할 경우 부모에게 수납)
 [예시2] 50만원 특별활동비 지출,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지원금 30만원 A업체 지출, 부모자부담(지원 받지 못한 아동) 20만원 A업체 지출
-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활동비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지원된 비용 전액 반환, 제재부가금(5배 이내) 징수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이 물품·서비스 대금 결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전적 환급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지원금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무상보육 지원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됨

VII 기 대 효 과

- 달성군 전체 어린이집 원아의 형평성 있는 특별활동 지원
- 영유아 양육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 교육부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유치원 운영정책과 지자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활동비 운영 정책을 일치시켜 혼선 예방
- 교육부 무상보육비 지원과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 사업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 완전 무상보육 실현

- 【붙임 1】 :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반납 신청서(1)
- 【붙임 2】 :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반납 신청서(2)
- 【붙임 3】 :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변경 신청서
- 【붙임 4】 :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 사업 정산 서식(excel)

[붙임 1]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반납 신청서(1)

1. 신청자

어린이집			원장	
소재지			연락처	
기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사업종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			
반납사유	ex) 지원 제외 아동 지원금 / 당월 미참여 아동 지원금			

2. 반납대상

이름	생년월일	보육나이	반명	입/퇴소일	반납월	금액

위와 같은 사유로 무상보육비 지원 사업 지원금 반납합니다.

202 년 월 일

_____어린이집 원장 _____(직인)

[붙임 2]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반납 신청서(2)

1. 신청자

어린이집			원장	
소재지			연락처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사업명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			
반납 금액 및 사유	ex) 반납금 150,000원 / 4월 집행잔액 반납			

위와 같은 사유로 무상보육비 지원 사업 지원금 금액 변경을 요청합니다.

202 년 월 일

_____어린이집 원장 _____(직인)

[붙임 3]

달성군 무상보육 지원금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어린이집			원장	
소재지			연락처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사업명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			
변경 금액 및 사유	ex) 1세 : 55,000원 / 2세 : 60,000원 필요경비 산출에 따른 변경 신청			

위와 같은 사유로 무상보육비 지원 사업 지원금 금액 변경을 요청합니다.

202 년 월 일

_____어린이집 원장 _____(직인)